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30회 임시회 (2019. 5. 15.)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조희옥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경위

- 제 출 자: 마포구청장
- 제출일자: 2019년 5월 1일(수)
- 회부일자: 2019년 5월 3일(금)

2. 제출이유

-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의 해당 수수료를 관련 법령 규정에 맞게 감면율을 조정하고, 용어 및 조문 정리 등의 정비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선정된 모범납세자의 경우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의 발급 수수료’ 면제에서 100분의 50 경감하는 것으로 개정(안 제6조제1항제11호를 삭제하고, 안 제6조제3항 신설)
- 나.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의 발급’의 수수료 징수 종목의 명칭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의 발급’으로 정비(안 별표 중 제1호)
- 다. ‘건축물관리대장 무한증명’을 수수료 종목에서 삭제(안 별표 중 1호)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지방자치법」 제139조
- 2)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
- 3)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3조 및 별지 제49호 서식
- 4)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 및 같은 규칙 별지 제22호 서식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2019. 3. 28. ~ 4. 17.(제출된 의견 없음)
- 2) 가정복지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
- 3)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자율평가 결과: 원안 동의
-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 의결(2019. 4. 23.)

5. 검토의견

가.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의 해당 수수료를 관련 법령 규정에 맞게 감면율을 조정하고, 수수료 종목 명칭 등을 변경·삭제하여 정비하고자 함.

나. 검토의견으로는

- 1) 모범납세자의 경우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의 발급’ 수수료 면제에서 100분의 50으로 경감하는 것으로 개정(안 제6조제3항 신설)

- 「서울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선정된 모범납세자의 경우 실질적인 지원 차원에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수수료’를 전액 면제하도록 추진하였으나,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의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해당하는 경우로 50% 내외에서 가감이 가능하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이 있어 구민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표1〉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수수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 10. (생략) 11.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모범납세자가 신청하는 세목별 과세(납세)증명 ② (생략) <u><신설></u>	제6조(수수료의 감면) ① ----- ----- ----- 1. ~ 10. (현행과 같음) <u><삭제></u> ② (현행과 같음) ③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모범납세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수수료 감면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표2〉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현황(기준: 2018년, 단위: 건/원)

전체		모범납세자	
건수	금액	건수	금액
34,794	27,835,200	392	313,600

※ 마포구 모범납세자 수: 6,927명(서울시 전체 223,021명)

2) 수수료 징수 종목의 명칭 정비(안 별표 중 제1호)

- ‘지방세 세목별 납세 증명의 발급’은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다는 증명서로 발급수수료는 「지방세징수법」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면제대상이므로 납세증명서와 과세증명서 구분

없이 800원씩 징수하는 것으로 규정된 사항을 종목 명칭을 변경하여 수수료 금액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보임.

3) ‘건축물관리대장 무한증명’을 수수료 종목에서 삭제(안 별표 중 1호)

- ‘건축물관리대장 무한 증명’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건축물부존재증명서의 발급’으로 신설되면서 수수료가 삭제된 사항으로 규정에 맞게 수수료 항목을 삭제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상위법령 등이 개정되면 빠른 시일 내로 관련 조례 등을 개정하여 법적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표3〉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제3조 관련) 1.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36종)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제3조 관련) 1.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36종)		
종 목	단위	수수료	종 목	단위	수수료
가. 재산 및 지방세에 관한 증명			가. 재산 및 지방세에 관한 증명		
1) 지방세세목별 과세(납세)증명의 발급	1건	800원	1)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의 발급	1건	800원
2) 건축물관리대장 무한증명	1건	350원	2) 삭 제	삭제	삭제
3) (생략)			3) (생략)		

〈지방자치법〉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수수료의 징수기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이란 별표에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3조(지방세 정보의 제공방법) ① 법 제87조제1항 및 영 제57조제1항에 따른 과세정보의 제공은 별지 제49호서식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따른다.

〈지방세징수법〉

제5조(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① 납세자(미과세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여 납세증명서를 제출할 때에는 이전하는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부과되었거나 납세의무가 성립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지방교육세 및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증명서로 한정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받을 때
 2.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외국인이 출국할 때
 3. 내국인이 외국으로 이주하거나 1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외교부장관에게 거주목적의 여권을 신청할 때
 4. 「신탁법」에 따른 신탁을 원인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기 위하여 등기관서의 장에게 등기를 신청할 때
- ② 납세자로부터 납세증명서의 발급신청을 받으면 세무공무원은 그 사실을 확인하여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 제2조(납세증명서의 신청 및 발급)** ①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납세증명서의 발급신청 및 납세증명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세 납세증명(신청)서에 따른다.
-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증명서의 발급은 무료로 한다.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 제25조(건축물부존재증명서의 발급 등)** ①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에 적힌 건축물이 해당 대지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 대지의 소유자 또는 건축물의 소유명의인은 건물멸실등기의 신청을 위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별지 제22호서식의 건축물부존재증명발급신청서(※수수료 무료 기재)에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여 건축물부존재증명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부존재증명 발급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현지조사 등을 실시하여 해당 대지에 등기된 건축물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 후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 건축물부존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